

2024년도 예금보험공사 상반기 신입직원(변호사) 채용안내

1 채용예정 인원 : 5명 이내

직원 구분	채용분야	채용규모	직무기술서
종합직	금융법무	4명	첨부 참고
	금융법무(보훈)	1명	
총 채용 예정 인원		5명 이내	

※ 공사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임

2 지원 자격

구분	지 원 자 격
공통	① 남성의 경우 군필자(24. 6. 27.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또는 면제자 ② 공사 내규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⑤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금융법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실무수습 무관)
금융법무 (보훈)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실무수습 무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공사 「인사관리규정」상 채용금지자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3.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고]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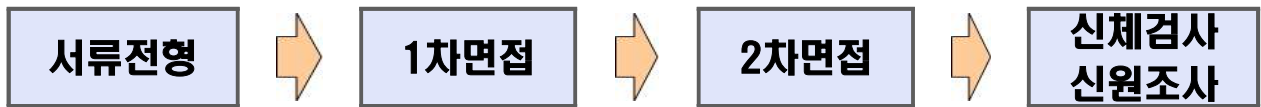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3 채용 절차

가. 채용절차 개요



나.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4.19.(금) ~ 2024.5.3.(금) 17:00
- 접수방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개별방문, 우편, e-mail 등 기타접수 불가)

다.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공사 직원으로서 기본 소양 및 공직윤리·인성,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능력 등을 평가위원이 종합평가
 - － 평가위원 산술평가 결과 고득점자(우대사항 감안) 순으로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방식으로 AI 인성검사 실시

라. 면접전형

구분	내 용
공통	■ 평가위원 산술평가 결과 고득점자(우대사항 감안) 순으로 선발
1차 면접 (실무진 면접)	■ 발표·심층·토론면접 실시 ■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태도 등을 바탕으로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 등 평가
2차 면접	■ 지원동기 및 입사의지,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 및 태도, 지원직무에 대한 능력 등을 바탕으로 종합평가

마.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구분	전형단계	평가기준	배점	선발배수
1차	서류전형	■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100 적·부 ^{주)}	4배수
2차	1차 면접전형	■ 발표·심층·토론면접	100	2배수
3차	2차 면접전형	■ 2차 면접전형 결과	100	1배수
최종	신체검사·신원조사	■ 채용결격사유 확인	적·부	-

주) 회사명 오기재, 타회사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인용, 자기소개서 항목(직무수행계획서 포함) 미입력·분량미달(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 수의 50% 미만 작성 항목이 있을 경우), 무의미한 동일어구 반복 등 불성실 기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바. 동점자 처리 기준

구분	전형단계	동점자 처리 기준(고득점 순)
1차	서류전형	보훈 관련 법령상 취업지원 대상자(가점 높은 순)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결과 → 우대가점 높은 순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이후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1차 면접전형	보훈 관련 법령상 취업지원 대상자(가점 높은 순) → 서류전형(총점) → 우대가점 높은 순 → 심층면접 → 발표면접 → 토론면접 → 이후 동점자 전원 합격
3차	2차 면접전형 ^{주)}	보훈 관련 법령상 취업지원 대상자(가점 높은 순) → 우대가점 높은 순 → 1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주) 동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각 전형별(1차 면접전형→서류전형)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 적용 후 선발

사. 채용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5.14.(화)	
면접전형	■ '24.5월중 ~ 6월초	
신체검사·신원조사	■ ~'24.6월중	
입사	■ '24.6.27.(목)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단계별 세부사항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아.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에 한해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사진 업로드 및 생년월일 입력 (면접전형 시 본인확인 용도)

－ (1차 면접 참가 시) 아래 서류를 직접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필수	금융법무 지원자	■ 변호사 자격증 또는 최종합격증서
	금융법무(보훈) 지원자	■ 변호사 자격증 또는 최종합격증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제출
	의사상자 등	■ 의사상자 증명서 ※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본인의 명의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및 지원자격 사항 증빙서류 등*(기제출분 제외)

* 세부내용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분야	대상자
해당자	■ (남성)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필요)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 (경력보유자) 경력(재직) 증명서 - 지원자 인적사항, 입사일, 담당업무, 재직여부, 퇴직(예정일), 징계사항 유무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종류, 일자 및 사유 기재)가 모두 포함된 증명서 제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실에 대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자.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등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를 활용할 예정(관련 비용 공사 부담)이며,

－ 입사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받아 제출

차. 예비합격자 제도 운용

○ 각 전형별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 다음 전형 지원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2차면접 합격자 포함) 중 입사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이를 감안하여 분야별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카. 최종합격자 선정 및 입사

4 우대 사항

가. 가점 우대

※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에 한해 우대사항 적용 예정

- 채용 시 우대를 위하여 발급기관에 관련 증명서 발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이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가점만 반영
- 지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해 적용

구 분	적용 분야	우대전형		우대 내용
		서류	면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 분야	○	○	5% 또는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전 분야	○	○	15% 가점 (2차 면접전형은 10% 가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전 분야	○	○	5% 가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등 ¹⁾	전 분야	○	○	3% 또는 5% 가점
비수도권 지역인재 ²⁾	전 분야	-	○	3% 가점 (2차 면접전형 限)
예금보험공사 인턴(우수인턴) 수료자 ³⁾	전 분야	○	-	3% 가점 또는 서류면제
예금보험공사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 당선자	전 분야	○	-	서류면제

- 1) (5%)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관련 법령상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 (3%) 의사상자 관련 법령상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2)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학교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자로 상세 사항 '별첨1' 참고
- 3)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직전 2년 이내 고용계약서 상 근무종료일까지 중도퇴사하지 않고 근무한 청년인턴·대학생인턴·일경험인턴에 한함('22.5.3. 이후 수료 인턴)

나.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대

- 서류전형, 1차 면접전형에서 비수도권 지역인재*가 채용분야별 합격 기준 인원(35%)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 득점한 지역인재 등 추가합격 처리

* 대학교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인 자로 대학원생인 경우, 졸업한 대학교 기준 등 상세 사항 <별첨1> 참고

5 기타 공지사항

-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채용일정은 각 전형단계별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채용전형 및 일정 등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에 다수의 지원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지원서 작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마감일 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는 5급 종합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이며, 수습근무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지원서 접수마감일('24.5.3.)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포함)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기재 착오 또는 누락,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부실기재자(자기소개서 등 입력항목 누락, 베끼기, 짜깁기 등)의 경우 서류전형 등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채용 전 과정에서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직·간접적으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노출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자기소개서 등 작성시 이름, 학교명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24.6.27.로부터 14일 이내 (별첨2)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insa@kdic.or.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에 대한 불합격자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별첨3'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insa@kdic.or.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합격자*는 부정행위 발견 시 임용 전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입사 이후에는 입사가 취소됩니다.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입사포기서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 시 조치

- 입사포기 시 입사포기서를 서명,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으로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입사포기서 없이 입사포기 간주 후 예비순번에 따라 입사 기회 부여
 - 입사 일시와 장소가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하거나, 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입사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입사일 집합시간으로부터 9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입사포기 간주
 - 입사포기서 외 전자문서(e-mail, 문자 등) 형태로 입사포기 내용을 고지한 경우

- 기타 문의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 인사팀(☎ 02-758-0150, 0133, 0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인지 여부는 해당학교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가 아님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별첨 2**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3**이의신청서 양식****채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이의신청자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E-mail
	연락처	
이의신청 내용		

본인은 위 기재내용과 같이 이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결과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상의 e-mail 앞으로 회신을 드릴 예정입니다.
3. 채용전형과 무관한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